

자녀학비보조비지급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직원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에 자녀학비보조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중·고등학교'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규학력을 인정한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1인의 교직원, 부부가 교직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제한) 자녀가 학비면제의 혜택을 받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절차) 자녀학비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매학년도 초 또는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등록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재무회계팀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취학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1개월 이내에 재무회계팀에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변상, 지급정지) ①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는 향후 자녀학비보조비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